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의안
번호

2017-

제출일자 : 2017. 4.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 이유

가야문화권 시·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회칙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1) 목 적: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

나. 기능(안 제2조)

- 1)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 2)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3)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 4)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 5)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 6) 기 능 : 관광마케팅 공동전략 수립, 관광상품 개발, 관광설명회 개최 등

다. 구성 및 조직(안 제3조 ~ 제7조)

- 1) 거창군·고성군·고령군·구례군·광양시·남원시·달성군·산청군·성주군·순천시·의령군·장수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을 포함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함
- 2) 협의회 의장은 1명으로 하고 사무국은 의장 시·군에 둠
- 3) 의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음

3. 규 약 안: 붙임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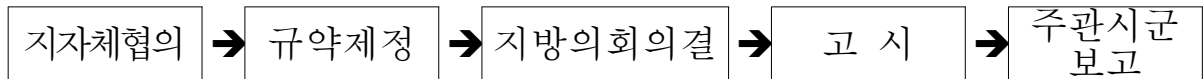
가. 관련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 2)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국민권익위 2016. 10. 31.)

나. 행정협의회 정의 및 설립 절차

- 1) 행정협회의 정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체

2) 설립절차



다. 기타사항

- 1) 임의협의체에서 행정협의체로 적법 구성 및 운영
- 2) 시군별 연간 분담금 규모: 8,000천원 정도

붙임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부.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규약안

제 1 조 (협의회 목적)

본 규약은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가야문화권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①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 ②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③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 ④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 ⑤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제 3 조 (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 지자체는 거창군·고성군·고령군·구례군·광양시·남원시·달성군·산청군·성주군·순천시·의령군·장수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을 포함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한다.
- ② 협의회 회원은 지자체의 시장·군수로 구성하며,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또한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 ③ 협의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추가 영입은 협의회 회의의 전원 합의에 의하여 추가 영입하게 한다.

제 4 조 (의장단 구성 및 선출)

- ① 의장은 1명으로 한다.
- ② 의장 선출은 호선한다.
- ③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회 의)

-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 ② 정기회는 연 2 회(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실시하기로 한다.
- ③ 협의회 개최지는 시·군별 순회(가나다 --- 순) 한다.
- ④ 협의회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고 대리참석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 ⑤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 6 조 (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 무 국)

- ①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지원은 시·군의 해당 업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2. 협의회 제반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무국은 의장 시·군에 둔다.
 4. 협의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후에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별 소속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부의 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 8 조 (경비 부담)

- ① 본 협의회 재정은 다음과 같이 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 협의회 시·군별 부담금
 2. 기타 수입금
 3.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경비를 부담한다.

- ② 본 협의회는 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융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 ③ 본 협의회는 지출은 회의 안건 의결에 따라 협의회 운영경비, 워크숍 및 체육대회 개최경비 등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를 사용하며, 협의회 시·군의 재난 발생시 의장의 판단으로 위문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결산보고는 당해 회의 개시전 기간까지 사용한 재정사항을 결산보고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은 협의회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 할 수 있다.

제 10 조 (운영 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는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 구성 기준)

-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자문위원)

-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